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

최 원*

|| 목 차 ||

I. 서 론	113	IV. 입 법 론	143
II.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115	1. 가산세 체계 및 세율의 정비	
1.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2. 발급의 상대방	
2. 연 혁		3. 발급시기	
3. 유인책과 제재책		V. 결 어	147
4.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			
III.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 ..	127		
1. 법령상의 가산세 체계			
2. 쟁점별 해석론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19. 2. 1. 1차수정일 : 2019. 6. 20. 게재확정일 : 2019. 7. 18.

< 국문초록 >

부가가치세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의 증빙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동일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수액 산정에 초점이 있음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이나 발급시기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입법이 요구됨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좇아 입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 문언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불일치를 가져와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 근거 법령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실무에서의 적용 내용을 살펴 체계적인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법해석론으로서는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경우 그 용처와 부당공제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산세 부담을 달리하여야 하고, 둘째,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해서는 지연발급, 선수금의 수령, 부분 결제의 경우 각 합당한 가산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 실무에 터잡고 있는 것이나, 그 문언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의 무질서와 과도한 가산세율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입법론으로서 개진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좀 더 정치하게 개선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현금영수증,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발급, 미발급

I. 서 론

현금영수증 제도가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창안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지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¹⁾ 특히 전문직 자영업자, 음식·숙박업, 사설학원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판매업의 소득 파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²⁾ 근래에는 여러 나라가 이 제도의 장·단점에 관해서 분석하는 등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³⁾ 여하튼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우수’로 점수 매김 하여도 될 만큼 세정현장에 잘 안착되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여러 부수적인 강운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유인책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며, 현

1)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연간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수의 증가를 추정하여 보면 종합소득세는 연간 9천억 원에서 3조1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 원에서 2조5천억 원 정도임에 비하여 그 제도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간 9천억 원 정도에 불과해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편익이 비용에 비하여 3배에서 6.4배정도 높아 그 효율성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조하영·고은비·송헌재, “현금영수증 제도의 경제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17, 157~171면 참조).

2) 이남령,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9권 제8호, 대한경영학회, 2016. 8., 1367~1387면 참조.

3) 해외에서 우리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거나 벤치마킹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하영 외 2인, 위의 논문, 144면 참조.

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 및 의무발행 대상 업종임에도 미발급한 경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제재책으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미발급에 대하여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국세청장의 지도사항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정현장에서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심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가 담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대신 거래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경우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소득공제 등을 위하여 무거래 발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⁴⁾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과세관청 사이에 무거운 가산세 부과로 인한 분쟁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이면에는 사업자나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관련 법적 분쟁의 빈발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책의 하나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의 법령은 그 발급의 상대방이나 발급시점에 관하여 그 내용이 거래현실과 유리되어 법해석상 분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중국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법상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의 유형에 관하여 일별하여 보고,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개진하여 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4) 이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문으로서는, 김영심·박규현, “세법상 현금영수증 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9. 3., 213면 참조.

II.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1.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현금영수증 제도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로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으면 다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이와 같이 모집한 현금거래 정보를 전송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그 상대방 사이의 현금거래 사실을 국세청에서 온라인상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또는 구조를 말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로 인하여 은폐하기 쉬운 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투명한 사회의 지향으로 세정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며, 소득을 탈루하기 쉬운 자영업자와 소득의 탈루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근로소득자 간 과세의 형평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거래의 투명성을 고양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⁵⁾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국

5) 박규현, “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2면 참조.

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통보받아 다시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각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현금영수증 거래내용을 승인하며, 그와 같이 수집된 현금영수증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연 혁

전자결제수단의 발달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원활해지자 국가는 1999년경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거래를 적극 장려하였다. 그러한 정부 시책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장의 경우 거래내역이 상당부분 노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종, 특히 전문직 자영업, 음식·숙박업, 사설학원, 건축수리업 등에서는 여전히 거래내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는 현금이 결제된 거래에 대하여도 국세청이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고안하여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3. 12. 30.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입법되어 2004. 9. 시범실시를 거쳐 2005.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나 2010. 4. 1.을 기점으로 전문직 자영업자 등 특정업종에서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발급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의무발급제도를 채택하였다. 2014. 7. 1.부터는 의무발급한도를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낮추었다. 당시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시에는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의 부과라는 강력한 제재책을 동원하였다. 과세실무현장에서 50%의 과태료 부과는 실제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소신고 세액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었다. 이처럼 과중한 과태료 입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거래는 곧바로 탈세로 이어지고, 세무당국에서 이를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중한 과태료에 대하여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학계⁶⁾와 실무계에서 비등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하면서 합헌결정을 하였다.⁷⁾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문직 자영업자 등 업계의 탄원과 학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2019. 1. 1.부터는 50%의 과태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 가산세 20%만 부과하는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태료 제도의 폐지는 가혹한 제재책만이 제도의 활성화를 담보하는 방안이 아님을 국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3. 유인책과 제재책

현금영수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세법은 유인책과 제재책을 모두 마련하고 있는바, 차례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유인책으로 첫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 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거래단계에서 최종소비자는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면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대금의 증빙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만으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고려하에 경제활동인

6) 유재권, “현금영수증제도와 과태료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260~264면 참조.

7)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3헌바56 전원재판부 결정. 이 결정에서 9인의 재판관 중 6인은 합헌의견을, 3인인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개진하였다.

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 결제한 증빙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안하여 시행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증빙의 수취와 더불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해당 귀속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의 수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용도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한다.⁸⁾ 이 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⁹⁾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바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라 할 것이다.

둘째, 현금영수증가맹점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세액공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¹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결제 건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건수에 따라 건당 12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감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¹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그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송할 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의 유인책을 두어 현금영수증 활용을 장려하고자 한 취지이다.

셋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이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의 결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1천만 원의 한도에서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를, 그 외의 경우에는 1.3%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 제4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0항.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

한다.¹²⁾ 이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넷째, 법령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 및 의무발행대상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는 연간 200만 원, 건당 50만 원을 한도로 거부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¹³⁾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한도의 제한 없이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¹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방편으로 그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재책으로는 첫째, 현금영수증 관련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도이다. 가산세는 여러 유형에 따라 현금영수증 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1%부터 20%까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다.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산재하여 있다. 이 글이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둘째,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이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시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¹⁵⁾

1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1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제4호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

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15) 소득세법 제177조 제2호·제162조의3 제8항, 법인세법 제124조 제2호·제117조의2 제8항.

4.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¹⁶⁾ 현금영수증의 각 개념 요소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¹⁷⁾ 여기서 말하는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거나,¹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거나,¹⁹⁾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이거나,²⁰⁾ 숙박 및 음식점업, 각종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 골프장 운영업, 가구 소매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²¹⁾ 법령이 특별히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업종이다. 즉,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

17)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

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그 대가의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업종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종의 의무지정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고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 등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부가하는 방법 외로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하거나 국세청 ARS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²²⁾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바이나, 정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정의는 위의 각 법령에서는 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와 ‘용역’ 그리고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혁적으로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먼저 이용되고, 최종적으로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증빙으로서 현금영수증이 탄생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²³⁾ 현금영수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그 기능을 고려하여 보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의미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의미와 달리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²⁴⁾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 3의 3.

2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코너 참조.

2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5항, 제46조 제1항.

2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⁵⁾

다. 현금의 결제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이 사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금’과 ‘현금의 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개별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현금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말하는 것이나,²⁶⁾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으로서의 현금은 반드시 이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법령에서 말하는 현금의 의미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국내 또는 국외의 법정통화가 현금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표 또는 어음의 교부를 현금의 결제로 볼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은행이 발행인임과 동시에 지급인이 되는 자기앞수표의 경우는 현금대용증권으로서 법정통화와 그 기능이 다를 바 없으므로 현금의 결제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당좌수표나 가계수표 등의 교부는 수표를 ‘교부한 시점’이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지급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 받은 시점’에 현금의 결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물론 수표가 지급거절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발행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나, 현실 세계에서 부도의 발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세법, 특히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가산세 부과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어음 역시 같은 이유에서 ‘어음의 교부 시점’이 아니라 어음을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금의 결제가 있

2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26) 인터넷 포털 네이버(www.naver.com) 국어사전.

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품권은 현금대용증권으로 그 기능이 현금과 동일하므로 상품권을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교부하는 때에 현금의 결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 대물변제는 그 지급의 수단이 ‘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현금의 결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금의 결제방법으로 법정통화의 직접적 교부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금융기관 계좌에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허용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표준 양성화에 그 초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계좌에의 입금 역시 현금의 결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편의 하나라고 하면서 이를 현금의 결제방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²⁷⁾ 이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계좌에 입금한 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 계약당사자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 즉 자기의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²⁸⁾ 대법원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의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 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²⁹⁾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27) 대법원 2016. 3. 11. 자 2015마1864 결정.

28) 이성식, 『부가가치세법 해설』, 조세신보사, 2016, 766면.

29)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착오 없이 지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거래실태는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제대로 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³⁰⁾ 여하튼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의미를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의미와 같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의미와 같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관계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딸을 성형외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고 그 비용을 어머니가 부담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증여하고 병원 측과의 계약은 딸이 하였다고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병원 측과의 계약 당사자이고 그 용역 제공의 상대방을 딸로 지정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였다고 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 어머니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재화의 공급의 경우에도 대가를 지불한 자와 그 재화의 성질에 따른 효익을 직접적으로 향수하는 자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재화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지불한 자가 구입하여 이를 현물로 직접적 향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돈을 부담하고 구입을 한 자에게 발급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현실 세계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정보다는 그 거래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 상

30) 同旨 : 김두형, 『부가가치세법론』, 피앤씨미디어, 2016, 325면.

대방의 특징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나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제한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법 해석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국세청장이 승인하여 사업자등록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주로 신용카드단말기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단말기의 전자적 기능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그 발급내용이 통보되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그 거래내용을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터넷PC나 ARS를 통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인터넷상의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이나 우선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바. 발 급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를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이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로서 기명발급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발급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기명발급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사업을 하는 자가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공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명발급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반드시 종이 형태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에 그 상대방을 지정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은 인터넷 또는 ARS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의 활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기명 발급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자가 그 발급의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서 신용카드단말기에 국세청이 부여한 코드³¹⁾를 이용하여 거래사실을 입력하는 경우이다.³²⁾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무기명발급이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 또는 입력하는 바람에 현금영수증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명발급이건 무기명발급이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발급에 해당한다.

사. 거래일시와 금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자 단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거래일시와 금액 외에 거래상대방이 특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덜하다. 현금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거래금액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간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일시이다. 영수증의 범위에는 간이영수증과 같이 인쇄된 종이 용지에 거래일시와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것도 포함되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단말기 등 전자적 기계에서 거래일시와 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출력하거나 인터넷상의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에 거래일시나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1)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는 010-000-1234이다(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3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210조의3 제10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

Ⅲ.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

1. 법령상의 가산세 체계

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³³⁾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³⁴⁾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분 제외)에 1%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더한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³⁵⁾ 결국 이 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과한 사실이 부과요건이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나. 무거래 발급 또는 수취(3% 또는 2%)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그

33)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34)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2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2항.

35)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1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상대방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³⁶⁾ 부가가치세법상 이 무거래 발급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무거래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³⁷⁾ 무거래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과의 요건이 된다. 발급기한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나 선발급한 경우는 무거래 발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거래 발급은 공급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분식의 목적이거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 측에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과다계상이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다. 위장 발급 또는 수취(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³⁸⁾ 만약, 현금영수증의 위장 발급 또는 수취가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나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에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³⁹⁾ 실제 재화와 용역을

3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

37)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목·다목,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나목·다목.

38)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제4호.

39)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마목,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라목·마목.

공급한 자 또는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현금영수증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즉, 소위 위장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다.

이 가산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첫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 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둘째, 현금으로 결제를 한 사실, 셋째,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와 현금영수증 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다른 현금영수증의 발급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 측에서는 현금영수증 상의 공급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공급받는 자 측에서는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상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가산세의 면제사유로서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고의·과실보다는 엄격하게 새기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하여서는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적극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 과다 발급 또는 수취(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⁴⁰⁾ 무거래 발급을 하는 목적과 같은 이유에서 과다 발급이 행해질 수 있다. 과다 발급에 대해서는 무거래 발급이나 위장 발급과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이를 규제하는 가산세 규정이 없다.

40)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제6호.

마. 적격지출증명서류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적격증명서류의 수취(2%)

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의 하나를 교부받아야 한다.⁴¹⁾ 그런 의미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적격지출증명서류’라 한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적격지출증명서류가 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적격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적격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세나 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⁴²⁾ 여기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란 거래당사자나 거래일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과소기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문에서 가산세 산정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즉 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다기재 현금영수증의 수취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과다 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가산세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⁴³⁾

바.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⁴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

41)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42)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43)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⁴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때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⁴⁶⁾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⁴⁷⁾

여기서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란 현금영수증 상의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하고, 거래일시나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는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가산세를 정하고 있는 법문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여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5%의 가산세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위장 발급 가산세나 무거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거래일시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아래의 지연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거래금액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를 ‘과소발급’뿐 아니라 ‘과다발급’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 관한 가산세 부과 법령 체계상 이 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산세 근거 규정이 발급거부에 대한 가산세 근거 규정과 같

44)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45)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5항.

46)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6항.

47)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2호.

은 문장 안에서 등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이나 과다발급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의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란 ‘과소발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을 것, 둘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셋째,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것, 넷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상의 거래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과소기재하여 발급할 것, 다섯째, 관할 세무서장이 위반 사실 및 발급 누락 금액에 대하여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위의 요건 중 다섯번째 요건인 과세관청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통보가 가산세 부과필요적 요건인지 다투어질 수 있다. 법문에서 ‘통보’를 명정하고 있는 이상 통보는 이 가산세 부과의 필요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착오나 누락으로 지연 발급한 경우(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⁴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⁴⁹⁾

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어야 하고, 둘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고, 셋째,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아야 하고, 넷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

48)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49)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대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야 하고, 다섯째,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지연발급의 해석에 있어서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의 지연발급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규정 형식으로 보건대, 7일 이내의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아래 항에서 언급하는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금결제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지연발급은 아래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다.

아. 미발급(20%)

위의 지연발급 가산세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⁵⁰⁾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⁵¹⁾ 2019. 1. 1. 이전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50%의 과태료를 부담하였던 것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20%의 가산세로 개정하여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중 가장 무거운 가산세이며, 이는 여전히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발급거부 가산세와 이 건 미발급 가산세의 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중한 이 건 미발급 가산세만 부과하고, 그보다 경한 발급거부에 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어야 하고, 둘째,

50)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5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고, 셋째,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아야 하고, 넷째, 현금을 결제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결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네 번째 요건을 결국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발급 가산세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쟁점별 해석론

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에서 살펴보았듯이 현금영수증이 기명발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즉,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 계약당사자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 즉 자기의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지는 법 해석이 가능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수취인을 지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장려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에게 부여된 혜택이 소득공제 제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증빙의 수취와 더불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해당 귀속연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의 수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내에서 사용한 용도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한다.⁵²⁾ 이 중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항.

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⁵³⁾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⁵⁴⁾ 거주자의 배우자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⁵⁵⁾

현실 세계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발생한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미혼인 아들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을 거주자인 아버지가 대신 부담하고 아버지를 현금영수증 수취인으로 하여 기명발급 받았으나 변호인 선임계약은 아들이 직접 체결한 경우와 둘째, 거주자인 남편의 배우자가 따로 사는 연로한 친정어머니의 라식수술비용을 부담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인을 남편으로 하여 기명발급받은 경우이다.

위의 첫째 사례는 아들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⁵⁶⁾라면 비록 변호인의 변론용역은 아들에게 제공되고 변호인 선임계약 역시 아들과 체결되었으나 아들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거주자인 아버지의 소득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때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 중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를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그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확장 해석하여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아들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래에서 보는 제3자 명의 발급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 제4호.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둘째 사례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⁵⁷⁾ 연로한 친정어머니가 비록 딸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⁵⁸⁾ 이 경우 장모의 요청으로 거주자인 사위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가산세 부담이 없는 적법한 발급이라고 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거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계 내에서 현금영수증 수취인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거주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하여 기명발급한 것은 적법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과세표준 양성화에 그 취지가 있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이므로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 중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주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확장해석하여도 국가의 세수 손실이나 거래질서의 문란 등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을 제3자로 지정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여동생이 성형수술을 받고 현금결제를 하면서 병원 측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오빠를 수취인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인적관계를 벗어나므로 거주자인 오빠는 그와 무관한 여동생의 현금결제에 의하여 자신의 현금영수증 소득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공제를 의도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 다른 예로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아버지가 부담하면서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지출증빙으로 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아들의 변호인 선임비용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산정시 사업과 무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부당한 필요경비 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관계를 놓고 보자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성형수술을 한 여동생이나 절도 피의자인 아들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발급 가산세 20%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의 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의 수취인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에 대한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⁵⁹⁾ 이에 유추하여 현금영수증의 수취인 명의를 제3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기본 취지가 매출누락의 방지로 인한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첫째, 제3자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상 거래금액 자체는 사실과 부합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입장에서 거래의 은혜를 통한 소득의 탈루는 전혀 없는 점, 둘째, 기명발급 뿐만 아니라 무기명발급의 경우도 적법한 발급에 해당하므로 제3자 명의 발급을 무기명발급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셋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제3자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미발급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오빠의 입장에서 병원 측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업과 무관한 아들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부당하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여

5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지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무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3%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가산세 2%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조세범 처벌법」의 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 발급에 대하여도 무거래에 관한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을 유추·적용한 결과이다.⁶⁰⁾ 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신용카드단말기에 부착된 개인정보입력 화면에 표시된 자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그 부당공제의 정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무거래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지정한 경우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나, 가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장이나 직원이 소비자의 현금결제로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사장 또는 직원 자신이나 또는 그 지인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부당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장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목적이거나 직원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부당 발급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입장에서 매출누락은 없는 것이지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발급은 없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의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미발급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상의 수취인으로 지정된 제3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과는 직접 거래가 없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 및 그에 의하여 수취인으로 지정된 제3자

60)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는 그 정을 알고 있는 경우 모두 무거래 부가가치세 가산세 3%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2%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발급 가산세와 무거래 가산세는 그 요건상의 중첩관계가 없으므로 별개로 과세되어야 한다. 이 역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발급과 무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의 별개 적용을 유추한 결과이다.⁶¹⁾

나. 발급시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발급인지 여부에 의하여 지연발급과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구별하여 부과하고 있는 점 및 현금영수증의 개념 요소에서 ‘거래일시’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추론해 보면 현금을 받는 즉시 또는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지연발급

발급시기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듯이 인터넷 뱅킹, 폰뱅킹이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현금의 결제 유형의 하나로 보는 것이므로⁶²⁾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금 즉시 알지 못하여 입금 당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를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변호사가 해외여행 등의 사정으로 계좌의 입금 내용을 수일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 결제를 한 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바람

6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62) 대법원 2016. 3. 11. 자 2015마1864 결정.

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⁶³⁾ 법문상으로 보면 5일 이내 무기명발급만 규정되어 있고, 기명발급에 대해서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5일 이내에 무기명발급을 허용한다고 함은 의당 기명발급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무기명발급이 가능하다면 그 보다 더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명발급을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이 기명 또는 무기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의 발급은 적법한 발급으로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규정⁶⁴⁾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⁶⁵⁾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기명 또는 무기명을 불문하고 현금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적법하다면, 결국 10%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7일 이내의 지연발급은 현금결제일로부터 6일차와 7일차에 발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현금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의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다음날과 그 다음다음날인 7일차까지의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기간이 결국 6일차와 7일차 양일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지연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입법론적 비판이 가능하다.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

64)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65)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

(2) 선수금의 수령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현금결제이 이루어진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결제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인도시나 용역의 제공 완료시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법령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의 개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지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⁶⁶⁾ 이 규정의 법문을 보면 현금영수증이 적법하게 발급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현금의 결제’가 모두 이루어져야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한편,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가 반드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의 현금결제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전제로 그 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면 일단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먼저 발행하고,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선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이 법문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양자의 해석 중 어느 쪽에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사건으로는 후자의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에 따른 해석론을 지지한다. 첫째,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금결제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의 발급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의 발급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훨씬 간명하다. 둘째,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를 반드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는

6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거래의 존재를 투명하게 보여주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보다는 현금이 그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 지급된 이상 비록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보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3) 부분 결제

같은 맥락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그 대가가 현금으로 수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각 부분에 대한 대가의 현금결제일’마다 발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 후 ‘마지막 현금결제일’에 그간 나누어 지급된 대금을 합하여 일시에 발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위 항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현금의 경우에도 ‘현금 지급일’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가 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각 부분 대가의 현금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부분에 대한 대가의 현금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아직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 또는 미발급 가산세 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IV. 입 법 론

1. 가산세 체계 및 세율의 정비

현재 입법된 현금영수증에 관한 가산세 유형은 각 가산세 제도 간에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체계성이 부족하다.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오직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거래당사자나 거래시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와 비교하여서도 현금영수증에 관한 가산세 제도는 그 입법이 산만하다.

세율에 있어서도 각 가산세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1%임에 비하여 미발급 가산세는 20%에 이르고, 위장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2%임에 비하여 지연발급 가산세는 1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각 가산세 간에 균형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 또는 20%를 가산세로 부담케 함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로 가득할 수 있는 소득 전체를 국가가 환수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법의 차원에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징벌적 조세이다. 위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50%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합헌판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만큼 가중하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3%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최대 가산세율임에 비하여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의 최대 세율은 그의 7배에 달하는 20%의 미발급 가산세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간 가산세 제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은 향후 입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를 참조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현재와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 수입금액의 1%로 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에서 현금영수증의 지연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가산세와 같이 공급가액의 1%로,⁶⁷⁾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거래당사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거래대금이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공급가액의 2%, 무거래 가산세는 현재와 같이 공급가액의 2%, 매출누락을 야기하는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무거운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율 정도로 정비함으로써 모두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발급의 상대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 정비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현행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제도와 관련하여 그 발급의 상대방과 거래시기에 관한 입법론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을 정의하는 법문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만 되어 있다.⁶⁸⁾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빈번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외의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미발급’이 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무거래 발급’이 되어 양쪽 모두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위의 쟁점별 해석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 부담이 달라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에 대한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6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4호.

첫째, 현금영수증가맹점측에서는 매출누락 등의 문제가 전혀 없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사이의 지정발급이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이 달라진다고 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아무런 변동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미발급 및 무거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무행정이다. 위의 법해석론에서 이런 경우에는 양자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법문의 문리해석만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라도 그 사용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주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의 한 사람을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입법형식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개념 요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세련되어 보인다.

둘째,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라도 그 수취인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였다면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한 것으로 위 법해석론에서 논지를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문의 문리상으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어서 제3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과세표준 산정에는 하등 지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무리한 발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입법이다. 이 같은 경우는 미발급가산세 부과의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의 법해석론에서 위의 둘째 유형과 같이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을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현

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무거래 가산세 3% 또는 2%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이 경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부당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공제에 적극 협력하거나 거절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으로 ‘통정하여’ 또는 ‘그 정을 알고서’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담하는 무거래 가산세 부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발급시기

발급시기와 관련하여 위에서 법해석론으로 현금결제일부터 5일 이내의 발급에는 가산세 부담이 전혀 없고, 그 다음날과 그 다음다음날에 해당하는 6일차와 7일차에는 10%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8일차부터는 20%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계좌입금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최초 가산세 면제되는 기간인 현금결제일로부터 5일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것이다. 입법으로 ‘현금이 지급된 날부터 10일 이내’ 정도를 가산세 면제 기간으로 두어 충분히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령은 5일 이내의 ‘무기명발급’만을 규정하고 있는데,⁶⁹⁾ 굳이 무기명발급이라고 하여 기명발급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해석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좋은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에서 ‘무기명’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10%의 지연발급 가산세 부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현금결제일부터 6일차와 7일차에 해당하는 오직 이틀간의 발급 또는 신고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동 가산세 규정을 장식적인 수사에 머무르게 하여 형해화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10%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이 적

69)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8항.

용될 수 있도록 ‘현금이 지급된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가산세 부담이 없는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10일 이내의 발급’ 등으로 그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아직 없었으나 이를 전제로 한 선수금으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관련한 가산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입법으로 타당하다. 이 경우에도 입법기술상으로 현금영수증의 정의 규정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을 전제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V. 결 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여러 나라에 자랑할만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세원의 투명성이 신장되고 과세표준의 양성화는 진전되었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하나의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현실 세계의 거래 사정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이나 현금결제일로부터 수일 후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구조에서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최종소비자가 주로 수취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그대로 대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현실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현행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와 세율은 세무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간의 각 체계나 경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질서할 뿐 아니라 그 균형을 상실하였다. 이에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거래 현실에서도 납세순응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두형, 『부가가치세법론』, 피앤씨미디어, 2016.
- 김영심·박규현, “세법상 현금영수증 제도에 관한 문제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9. 3.
- 박규현, “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유재권, “현금영수증제도와 과태료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 이남령,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9권 제8호, 대한경영학회, 2016. 8.
- 이성식, 『부가가치세법 해설』, 조세신보사, 2016.
- 조하영·고은비·송헌재,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17.

<Abstract>

**The Study on Requirements of Imposition for
Penalty Taxes about Cash Receipts**

Choi, Weon*

The system of cash receipts is the first scheme to be made in Korea. The sellers who contact end-consumers directly should issue cash receipts to buyers, which are special formal documents for identifying each transaction. This information of issuing receipts is transmitt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rough special business operators who can deal with the sellers. This scheme makes the taxpayers visible and transparent.

Inducements and sanctions are needed to better activate the scheme of cash receipts. One of such ways is to impose penalty taxes to prevent taxpayers from violating duties in relation to cash receipts. The literal descriptions of the legislation about cash receipts are not in con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real taxpayers. Therefore, the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eliminating this discordance. Firstly, recipients of cash receipts should not be the individuals who buy goods and services from sellers, but the groups in which the members share benefits from income tax deduction. Secondly, the issuing date of cash receipts should b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because enough time should be granted to the sellers. And the penalty tax of unissued cash receipts should be assessed for over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cash. The cash-receipts scheme should become a more concrete and accurate legislation for a transparent society without hiding our earnings.

▶ **Key Words** : cash receipts, penalty taxes, cash receipts member store, delaying issuance of cash receipts, unissued cash receipts

* Professor,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